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02
----------	------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28일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경우, 김소양, 황규복
김인호, 박기재, 오한아, 이정인
이호대, 장상기, 전석기, 채유미
최기찬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 코로나 감염병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외 입국자 등 불가피하게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자가격리자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감염병에 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이에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제7호의2).

3. 참고 사항

- 가. 관계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자가격리 장애인 지원) ①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 또는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2(자가격리 장애인 지원)</u> ①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 또는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